보험신업 현안 및 국민 체김형 과제

2024. 9.

관계기관 합동

순 서

1.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
----	------	------	------	----	--

2. 단체보험에 대한 무사고 보험료 환급허용 명확화 … 2

3.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3

4.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한도 정립······· 4

1.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나,
 - 보험회사의 자체 계약인수기준에 인해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상시 노출
 - *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 수준에 불과
 - ** 서천특화시장('24.1월, 65억원 피해), 제일평화시장('19.9월, 716억원 피해), 대구서문시장('16.11월, 469억원 피해)

【 개선방안 】

- □ 화재보험 공동인수(상호협정) 대상에 전통·일반시장을 포함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 해소
 - o (현행) 특수건물*, 15층 이하 공동주택만 공동 인수
 - *「화재보험법」상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국·공유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
 - (개선) 전통시장(점포 50개↑, 연면적 1,000m²↑) 및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공동인수 대상을 확대

【공동인수 확대범위 주요예시】

- (전통시장) 자연적으로 조성 전통방식으로 거래되는 시장(전국 1,388개)
- ② (골목형 상점) 소상공인 점포가 2,000m² 내 30개 이상인 곳(전국 115개)
- ③ (상점가) 지하도 등에 2,000m² 내 30개 이상 밀집(전국 350개)
- 4 (상권활성화 구역) 시장, 상점가 등이 하나 이상 포함된 구역
- * [기대효과] 1,853개 시장 269,365개 상점('22년 기준)이 추가로 보장 가능
- ➡ (要조치사항)「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개정

2. 단체보험에 대한 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 □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未**발생**(무사고)시, 지급하는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일종**으로 포섭·허용
 - * 한도 :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위험감소 물품은 20만원) 중 적은 금액
 - 그러나 단체보험의 경우,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피보험자 기준이 아닌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되어, 무사고 환급금 제공에 한계** 존재
 - * 특별이익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법 문언 및 보험 모집질서 감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해석 발급(190041)
 - ** 예) 대다수 단체보험 계약 한 건에 특별이익이 3만원으로 제한되어 단체보험 피보험자는 개별보험 피보험자보다 무사고 환급금 규모가 작을 수 있음

【 주요 개선방안 】

- □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의 경우,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 기준이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 발급
 - 피보험자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고, 무사고 환급금이 피보험자
 에게 직접 지급되는 등의 조건을 부과

⇒ (要조치사항) 비조치의견서 발급

3. 보험회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 □ 보험회사 및 자회사는 금융당국 신고 등을 거쳐 **헬스케어** 관련 업무를 수행 가능
 - 보험업법령 상 영위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다소 불명확*하여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 제약요인으로 작용
 - * 보험업법시행령(§59)상 '건강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 → 특정 서비스의 헬스케어 업무 여부 판단 필요

【 주요 개선방안 】

- □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 他법령에서 금지 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Negative 규제원칙 적용
- □ **非의료 가이드라인**(복지부) **개정으로 비의료기관이 영위**가 가능 하게 된 업무에 대해서 **보험사** 및 **자회사**의 업무범위로 인정
 -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병원** 및 **의료진을 안내**하고, **예약 대행**업무 * 의료법상 유인·알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 가능
 - 간호사의 병원 동행도 의료인의 진단·처방 등 의료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수행 가능

➡ (要조치사항) 부수업무 및 자회사 신고시 적용

4.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한도 정립

【 현황 및 문제점】

- □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장기요양·돌봄 서비스 증대에 따라 보험사간 '장기요양실손보험'*(이하 '요양실손') 개발 수요 확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의 요양시설·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실손보장하는 상품
- 다수 보험사의 경쟁적 상품개발로 인한 보장한도 확대 등 불건전 경쟁 우려가 없도록 상품 개선 등 필요

【개선방안】

- □ 보건당국 협의를 거쳐 보험금 지급체계 마련
 - (급여)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우선 보장 제외
 - * 적정 급여 이용을 위한 보장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 지속
 - (비급여) 요양시설의 과도한 수익추구 방지 등을 위한 상품 개선 방안 마련
 - 월간 보장한도(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를 항목별 설정
 -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률을 50%로 설정
- □ 향후 요양정책 변동 등에 따른 계약변경 조항 마련

<장기요양실손보험 상품 내용>

구	분	상품 내용			
보험금	급여	보장 제외			
지급	비급여	월 지급한도(항목별) 30만원·자기부담률 50%			
	계약 변경	공보험 제도·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시 계약 변경			
ᅰᄼᅡᅱ	계약 만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80세 이후로 설정			
계약자 보호 장치	판매 구조	끼워팔기 방지를 위해 단독상품으로 운영			
고로 이시	보상 방식	제3자 구조 적용 시 제휴 미비 등을 이유로 보험사가 제한 불가능			
	중복 확인	계약모집 시 중복계약 확인 필요			

➡ (要조치시항) 감독행정 실시 및 중복가입 확인을 위한 신용정보원 시스템 개선 등